 산업통상자원부				<h1>보도자료</h1>		<i>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</i>	
보도 일시	2022. 8. 23.(화) 11:00 < 8.24.(수) 초간 >	배포 일시	2022. 8. 23.(화)				
담당 부서	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	책임자	과장	최영수 (044-203-4070)			
		담당자	사무관	정솔 (044-203-4074)			

인수합병(M&A)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- 산업부, 「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」 제정·시행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(이하 ‘외촉법’) 및 시행령(제5조)에 따른 **인수합병(M&A)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**한 「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」(이하 ‘운영규정’)을 8월 24일자로 시행한다.
- 이번 운영규정은 **인수합병(M&A)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·보완하기** 위함이다.
- 동 운영규정은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**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**,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**인수합병(M&A)형 외국인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**.

< M&A 및 전체 외국인투자신고 건수/금액 > 단위: 건, 백만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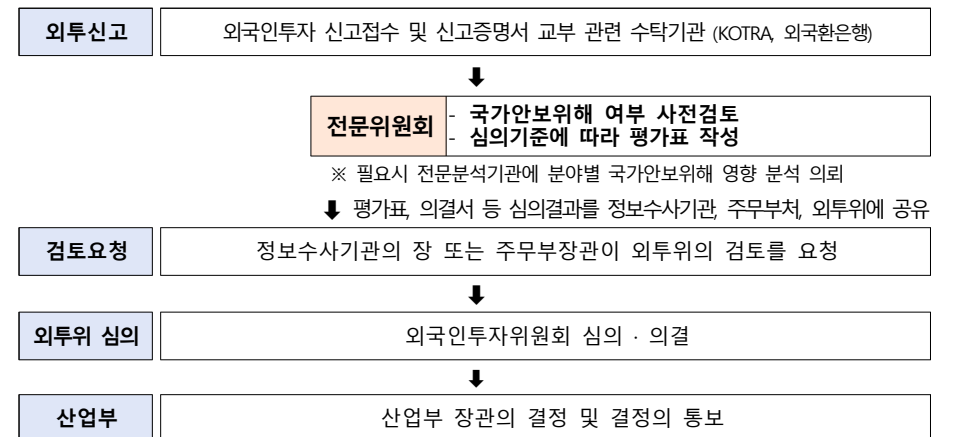
구분	2010년		2015년		2021년	
	M&A형	전체	M&A형	전체	M&A형	전체
신고건수	249	3,110	307	2,695	317	3,088
신고금액	2,015	13,073	6,804	14,104	11,421	29,513

- 즉,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**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인수합병(M&A) 중, 다음 5개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하도록** 규정되어 있다.(외촉법 시행령 제5조)

- 1)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2) 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또는 승인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(轉用)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
- 3)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
- 4)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5)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

- **현행 안보심사절차**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, 주무부장관 혹은 정보 수사기관의 검토요청에 따라 **외국인투자위원회**(위원장: 산업통상자원부장관)가 심의를 거쳐 **인수합병(M&A) 허가 및 제한 여부 등을 결정**하도록 되어있다.
-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**안보심의 전문위원회**(이하 ‘전문위원회’)를 신설하여, 주무부장관 및 **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**하도록 한다.
- 전문위원회(위원장: 무역투자실장)는 총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*으로 구성되며,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게 된다.
- * (간사) 산업부 투자정책관 ▲(당연직) 기재부·외교부·국방부·금융위 및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, 국정원·KOTRA·전략물자관리원 ▲(위촉직) 국방·기술·산업·공급망·보안·법률 전문가 등
- 또한,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미국, EU, 일본, 중국 등 **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**하여,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①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, ②투자대상의 취약요인, ③국가안보 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.
- * (위협요인) 외국인의 국내법 위반이력, 외국인·외국정부의 국내산업 통제 가능성 등 (취약요인) 투자대상기업의 핵심기술·물자 보유·생산 여부, 국내 대체기업 존재여부 등 (안보위해 영향) 당해 투자의 국방, 기술, 공급망·산업, 무역·투자·통상 등 측면 영향

<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>



□ 이번에 제정·시행되는 「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」은 8월 24일
수요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.

□ 이번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인수합병(M&A)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
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, 외국인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
하면서 동시에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외측법 및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
5개 분야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, 안보심사나 운영규정 적용의 영향을
받는 인수합병(M&A)형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.

* '22.1월~7월에 신고된 M&A형 외국인투자신고 168건에 대한 예비검토 결과, 경제안보
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없었음

○ 반면, 외국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함으로써,
외국인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안보심의 절차의 투명성과
객관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※ 붙임 : 「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」 주요내용



붙임

「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」 주요내용

□ (제1장 : 총칙) 목적, 용어의 정의를 규정(제1조~제2조)

○ (목적)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

○ (정의) 주무부장관, 수탁기관, 외국인투자 안보심의대상*

* (안보심의 대상) 외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포함된 외투기업 신고내용 중 @경영상의 지배권 취득 및 @투자대상 국내기업의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해당란에 모두 [표시]를 한 외투신고

□ (제2장 : 수탁기관의 통보 등) 수탁기관은 안보심의대상 외투가 있으면 주무부처
및 산업부에 즉시 통보, 신고증명서 발급 보류(제3조)

□ (제3장 :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) 전문평가기관의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, 국가
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, 외투위 및 산업부장관의 결정
통보 등 절차를 규정(제4조~제16조)

○ (안보심의절차) (필요시 전문평가기관에 분석 의뢰) → 전문위원회* 사전검토·의결
→ 외투위 심의·의결 → 산업부장관 결정 및 통보

* 위원장(무역투자실장) ▲(당연직) 기재부·외교부·국방부·금융위 및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
국장급, 국정원·KOTRA·전략물자관리원 ▲(위촉직) 국방·기술·산업·공급망·보안·법률 전문가 등

○ (전문위원회) 전문위원은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국가안보
위해 사전검토, 평가표 작성 및 안건 의결

- (심의기준)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심의기준으로 외국인, 투자대상기업, 국방,
공급망 등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 등의 고려요소를 규정

* (외국투자자) 자금의 출처, 외국인의 보유권한, 외국인·외국정부의 영향력, (투자대상기업)
기술의 중요도 등, (결과) 국방·군사기술에의 영향,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

- (평가표 작성 및 의결) 전문위원회는 심의 기준에 따라 평가표 작성 및 출석 과반수
찬성으로 의결, 전문평가기관 영향평가결과·평가표·의결서를 주무부장관 및 정보
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

- (전문평가기관) 정부는 필요시 KIEP·산업연·국방연 등 지정된 정출연에 외국인투자자의
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*를 수행하고, 전문위원회에 결과 보고하게 할 수 있음

* 해당 외국인투자자가 국가안보, 산업·공급망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

○ (외국인투자위원회)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가 통보한 자료
등을 참고해 외투위원회에 검토요청하고, 외투위원회는 국가안보위해 심의·의결

○ (산업부장관 결정 등) 외투위 의결에 따라 산업부장관 결정 및 통보

□ (제4장 보칙) 사후관리, 수당 등 지원, 비밀유지 의무(제17조~제19조)